

產業民主主義

—그 배경과 몇가지 기본적 문제에 관하여—

金 晉 均

(前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 次>		
I. 序	III.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II. 배 경		

I. 序

(1) 산업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主題的 表現이다. 산업민주주의의 理念은 오래된 것이지만, 그것이 1960~1970년대부터 새롭게 歐美의 先進產業國家에서 주창되고 있는 것은 歷史的 主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민주주의의 형태는 각국의 文化差異만큼이나 다양하고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포용해 가고, 더 나아가 社會的 民主主義로 확대해 가는 범위와 수준이 다른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각국에서 주요한 勞動組合이 주도했던 勞動運動이 勞使關係를 각 국가사회에서 단체교섭의 형태로든지 또는 共同決定이나 自主管理의 형태를 확립해 가고 있든지 간에, 산업민주주의의 理念은 이러한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끈질긴 노동운동을 전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勞動三權이 확립되지 못하여 단체교섭조차도 밀 바닥에서 맴돌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체의 노동운동 理念도 산업민주주의 이념에 포함되고 있다. 더구나 歐美的 선진산업국가에서는 勞使關係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또한 공통적으로 勞動者(또는 모든 勤勞者)의 經營參加를 산업민주주의의 공통적인 목표로 접근해 가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歷史的 主題의 변화라는 것은 곧 勞動運動의 이념이 노동자계급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社會的으로 확산되어 다음과 같

이 그 主題를 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순수하고 형식적인 政治적 民主主義를 완전하고 실질적인 社會的 民主主義에로 변혁하는 것이며, 이 社會的 民主主義란 것은 人民의 大多數가 인생의 가장 귀중하고 가장 건강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工場과 事務室에까지 확대시키자는 것이다.”⁽¹⁾ 산업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만을 극복하자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資本主義國家를 포함하여 工業化를 통하여 量的 擴大社會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行政的이고 軍事的이며 政治的인 모든 형태의 全체주의에서 공통적으로 고착되어 오거나 고착되고 있는 구조적 특징, 즉 “모든 형태의 權威主義와 官僚主義”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이 천착되고 있다.

Ⅱ. 배 경

(2) 러시아혁명이 20세기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세계의 곳곳에 福音처럼 전달되기도 하였지만,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의 共產主義體制에서 발전되어 온 사회구조는 역시 生產性과 能率을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하여 結晶화되어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노동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權利는 배제되고 一黨의 지배하에 있는 中央集權의 統制體制를 강화시켜 왔다. 산업민주주의자에게 소련이 보여 준 치명적인 상처는 勞動者의 自主管理運動에 대한 소련의 태도였다. 1950년 6월에 유고슬라비아는 노동자의 自主管理原則을 법률로 공포하여, 모든 工場과 企業을 노동자의 집단적 운영에 이전시켰는데, 이 自主管理原則의 선언은 東歐圈에 있어서 社會主義運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게 되었다.⁽²⁾ 1969년 11월에 소련은 체코에 군대를 진주시켜 점령하였다. 소련의 체코軍事占領은 체코에서 오타식 (Ota Sik) 개혁에 의하여 自主管理制度를 확립하려는 民主化運動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체코는 관료주의적인 경제의 운영에 의하여, 특히 기업과 공장수준에서의 적절치 못한 운영에 의하여 체코의 경제가 결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되자, 오타식 (Ota Sik) 개혁안에

(1) 찰스 레빈슨(金錦守역), 『多國籍企業과 勞動運動』, 禮豐出版社, 1976, p. 200.

(2) 찰스 레빈슨 編(金錦守역), 『產業民主主義』,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도 협의회, 1978, pp. 63~65에서 체코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였음.

의하여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감소시키고企業에게 높은 수준의自治權을 부여하여 경제개혁을 단행코자하였다. 生產에 대한 중앙집권적 계획기구의 거대한 權能을 대폭 감소시키고工場委員會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가 동시에分權化된企業經營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이 개혁안이 급속도로 도입되었다. 이 공장위원회는 “經濟的 영역에 있어서의共產黨의 지도적 역할을 빼앗아企業에 대한國家의 영향력을 폐지하고全人民에 의한所有를集團에 의한所有로 이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체코에서는 소련의 군사점령후 1970년에 체코政府가 모든工場委員會를 폐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체코의自主管理制에 의한민주화운동은 종식되었고, 산업체는 중앙집권적통제하에서 1人指導體制로 복귀하고 말았다.⁽³⁾

이론적으로 설정되는 프롤레타리아트獨裁는 실제적으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프롤레타리아트獨裁는 소련에 있어서 거대한社會主義經濟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새로운官僚와 엘리트階層을 형성시켰고 이들에게 막강한 權力を 주었다. 이들도 노동자를 대표하여 그權力を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所有權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生產手段의 효율적인統制를 통하여特權的地位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도工場構造는階級組織의權力體系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⁴⁾ 한편地域・地方 또는全國의 경제운영기구의 의사결정기구는 훈련된黨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工場에서는 合同經營・勞動組合委員會가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자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반씩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생산계획의 실행・작업편성・임금의 지불・공장내의 규율・주택 및 기타 서비스에 관련된 단체협약의 적용상의 충돌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 기구는 일반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며 계획된 생산을 수행하기 위하여親權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따라서 경제적・산업적 영역에서는 아무런權利나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여, 非經濟的 영역, 즉 사회적 서비스・건강

(3) 이러한 노동조합의自主管理運動은 루마니아・동독・불가리아・폴란드에서 소련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4) 레빈슨(1978), *op. cit.*, 工場의位階組織은 管理責任者・副責任者・部長・技術者와技士・지지를 받는 속련노동자・반속련노동자・미숙련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p. 72). 소련工場의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 중에서 95% 이상이共產黨黨員이며, 모든 수준의 노동조합임원도 95%가黨員인데, 노동자는 20~30%가黨員이다(p. 73).

계획・휴게소・요양소・교육계획 등의 운영에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工場은 일반 노동자의 參加 없이 黨이 통제하는 身分 差別的 經濟活動과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자 참가를 인정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⁵⁾ 소련 憲法에는 노동자의 파업권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책임자와 노동조합의 결합된 힘에 의하여 파업은 反革命行爲와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中央集權的인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도 관리책임자와 노동자(임금노동자) 사이에,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 사이에는 충돌과 긴장이 있기 마련이며, 소련과 같이 노동자의 파업권이 실제로 무시당하고 또 經濟와 產業에서 노동자의 의사결정이 전혀 배제되고 있는 체제에서는 유고와 같은 自主管理制는 中央集權的 國家의 理念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工場에 있어서 관리자의 1人經營原則이나 黨의 우월성, 그리고 이에 의하여 창출되는 特權的 利益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산업민주주의는, 이러한 소련의 체제에 있어서는 마르크시즘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도그마化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르크시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自由(人間解放)・經濟的 社會的 正義 및 인간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의 理念을 중요한 價值로서 평가하여 수용하고 있다. “마르크스를 어여한 人物로 규정하거나 어여한 人物로 만들려고 하거나 간에 自由를 위한 투쟁,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인간해방이 그의 思想과 그의 行動의 동기였다.” 마르크스가 살던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조건하에서 “政治的 自由와 民主主義를 위한 투쟁이 당시 새로운 產業勞動者階級의 비참한 生活狀態에 반대하는 투쟁과 열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는 封建政治와 專制政治로부터 부르죠아지를 해방시킨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를 資本支配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뛰어여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⁶⁾ 서독에 있어서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헌신하였던 브란트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한 革命的 民主主義로서 政治的 自由와 民主主義를 결합시킨 政治制度를 모색하면서 政治的 自由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였으며, 그가 참여한 言論과 結社의 自由 같은 民主的 權利를 위한 투쟁이 전략적 중요성, 말하자면 勞動階級의 政黨形成이나 勞動組合의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그 중요성을 갖고

(5) *Ibid.*, pp. 73~74.

(6) 빌리 브란트(노종호 역), 『平和의 哲學』, 齋文堂, 1979, pp. 273~274.

(7) *Ibid.*, p. 275.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것이다.⁽⁷⁾ 마르크스는 物質的 生產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여건하에서도 희생과 노력과 궁핍을 要한다는 것을 깨닫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인의 보람있는 여가를 마련해 주는 참다운 自由의 王國이 인간해방의 가능한 최고 단계라고 보았다.⁽⁸⁾ 브란트는 自由의 歷史方向을 疎外克服으로서 특징있게 본 마르크스의 소외론의 현대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마르크스 以後의 世代들은 自由가 경제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財產所有關係만의 变화로서는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우리는 부르조아 革命의 遺產의 除去(立憲國家와 그 法的 秩序)가 『빠리橋本』에서 다소 소박하기도 하였으나 그렇게도 열광적으로 찬양하였던 참다운 自由를 가져 오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다. 반대로 우리들 특히 合目的的으로 變形되어 버린, 마르크스理論의 스탈린의 實踐으로부터 社會的・經濟的 條件의 革命的 變化가 自動的으로 疏外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形態의 소외, 즉 框을 형성한다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實驗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부르조아革命遺產의 과과는 오히려 自由의 축소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나는 부르조아가 아니라 市民을 의미한다고 하고 싶다. 즉 自由를 향한 투쟁을 그들 자신의 階級利益에만 제한하지 않는 不屈의 市民을 의미하는 것이다.”⁽⁹⁾

(3) 한편으로 산업민주주의를 새롭게 작성하게 된 계기중에는 兩次世界大戰사이에 發興했던 파시즘을 철저하게 반성한 것도 중요한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國家社會主義의 지배형태가 발생하는 데는 적어도 러시아혁명 자체와 1차세계대전 및 세계적 경제공황에 대한 복잡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西方의 파시즘體制가 자본주의적 경제조직과 사회조직

(8) *Ibid.*, p. 278.

(9) *Ibid.*, p. 294.

마르크스는 노동의 영역에서 소외는 네가지 측면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그가 생산한 대상으로부터, 生產過程으로부터, 그自身으로부터, 그리고 그 동료들의 共同體로부터 소된다는 것이다. [참조, 루이스 코저(신용하·박명규의 等, 『社會思想史(I)』, 一志社, 1978, pp. 83-87 및 鄭文吉, 『疎外論研究』, 文學과 知性社, 1978]. 소외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업민주주의가 노동의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근로자)의 의사결정참여를 목표로 하여 공업생산의 관계 영역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모든 수준에(국제관계의 수준)까지 의사결정의 참여를 추구한다는 것은 곧 마르크스의 소외론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고 있는 셈이다.

의 危機的 產物로서 성립했다고⁽¹⁰⁾ 한다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자체가 파시즘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미 19세기 말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실현되고 모든 재화의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가진 자의 엄청난 풍요와 못 가진 자의 빈곤은 더욱 확대되었다. 더구나 태일러의 科學的 管理方法을 중심으로 하는 分業生產方式의 보급에 따라 그 때까지의 여러 계급간의 질서를 변모시키고 무수한 장인(匠人), 소규모 상인 및 소지주들의 중산계급에게는 언제 무산계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안겨 주었다. 대자본가를 적대시하면서도 개인의 소유를 박탈하는 집산주의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태도를 지녔던 중산계급은 계급투쟁을 기피하고 오히려 계급을 초월한 국가의 출현을 희망하였다. 적은 재산이나마 놓치지 않겠다는 중산계급은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고 조국에 대한 위험에는 민감하였다.⁽¹¹⁾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나 독일에서처럼 파시즘이 대두되기 전의 정치적 상황은 立憲政府가 民主主義를 확고히 하여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파시즘의 공통적인 敵은 立憲民主體制이며 입헌민주주의는 우유부단하고 결단성이 없으며 결국 자신의 소멸 또는 부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制度라는 것이다.⁽¹²⁾ “압력단체의 말대로 움직이는 약체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는 부패되어 있으므로 도저히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의회제도도 따위는 무의미한 제도이며, 언론의 자유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복수정당제는 협회이 분열과 논쟁을 거듭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지도자를 국민이 뽑는다든가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언어도단인 어리석기 짹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파시즘의 사고방식이었다.”⁽¹³⁾ 이와 같이 立憲民主體制의 전통이 오래된 국가에서조차 야기되었던 정치적, 도덕적 혼란은 민주주의제도가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었고 따라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혼란과 불안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중에는 특히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따른 공포상태에서 탄생하였으며, 독일의 나치즘은 20년대 말과 30년대 초기의 세계공황

(10) 尹謹植, 『政治學』, 大旺社, 1978, p. 161.

(11) 양리 미셸(유기성 역), 『세계의 파시즘』, 도서출판 청사, 1979, pp. 22-23.

(12) F.M. 왓킨스(李洪九 역), 『近代政治思想史』, 乙酉文化社, 1973, p. 186.

(13) 양리 미셸, *op. cit.*, p. 14.

에서 그 성장의 계기가 주어진 것처럼 전쟁과 공황이라는 요인이 있었기도 하였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전승국에 속했으나 전쟁의 대가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통화가치의 하락, 농민들의 빈궁화, 실질소득의 하락, 제대장병의 처우불만, 전쟁모리배의 부당한 치부, 민족적 굴욕감(연합국이 이탈리아에게 참전 당시 약속했던 식민지 영토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 등이었으며, 나라 전체가 무정부상태에 빠지는 듯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독일은 1918년에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전쟁부채와 배상금지불에 의한 경제적 압력과 민족적 굴욕감에 동시에 시달리고 있었다. “패전에 따르는 경제위기는 인플레의 엄청난 상승을 초래하였고, 게다가 30년대의 세계공황의 여파가 겹쳐, 당시의 독일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29년에 150만을 헤아렸던 국내의 실업자수는 1932년에 약 600만에 달하였고, 공업생산도 마찬가지로 1929년 실적의 50%로 저하했으며 그후 또다시 30%로까지 하락하는 결과가 되었다. 국내의 중산계급은 몰락하고 무산계급의 궁핍은 극히 심해져서, 독일의 사회 전체가 이때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¹⁴⁾ 1921년에 탄생한 나치당(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은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당원수가 40만에서 120만으로 증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복지만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량 살인이라는 폭력의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폭력에의 승배와 그 효율적인 사용은 파시즘의 기본 특징중의 하나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국적인 參戰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국가에서 많은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전쟁에서 기존 계급제도가 무시되면서 새로운 인간층, 즉 획일적이고 순종하는 인간집단인 제대장병을 산출해 놓기도 하였으며, 이 제대장병을 중심으로 하는 중산계급이 파시즘의 기반 세력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서방 파시즘의 대두에는 소련의 볼셰비즘 혁명과 그 성공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자본주의국가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을 때에, 소련의 볼셰비즘 혁명의 성공은, 한편으로는 전체 유럽에 그 혁명이 파급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게 생겨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려난 관을 극복해 가는데 도리어 소련과 같은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少數의 職業的 革命家集團이 러시아帝國을 정복하고 그들 지도자들의 意志에 러시아 全體를 종속시킬 수 있었을진대, 다른 나라의

(14) *Ibid.*, p. 71.

革命的政黨들도 그와 비슷한 紀律과 指導原則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똑같이 결정적인 결과를 자기 나라에도 초래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파시스트들은 잘 훈련된 黨엘리트에게 政權을 許與함으로써 하나의 救濟策을 제시하였으니, 그것은 靈感을 얻은 하나의 絶對的 指導者의 領導아래 黨엘리트가 國家的 統合을 회복하고 國家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위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었다.”⁽¹⁵⁾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政權은 1927년에 노동현장에 의하여 協同組合國家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융통성있는 일종의 생디칼리즘을 실현하였고, 지역마다 설립되었던 보험상호기금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조직하기도 하고 노동재해보험, 불구자보험,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제도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파시스트政權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각 계층은 모두 서로 평등하다는 社會福祉의 사고방식을 보편화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곧 계급투쟁이기도 하고 또한 계급이익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이익에 배치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므로, 파시스트政權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업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政權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어디까지나 보존하면서 한편으로 기업의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여 결국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증진에 봉사하였으며 결손만을 공적인 부담으로 하는 방책을 강구하였던 것이며, 동시에 중산계급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파시스트政權은 그 중산계급에게 조차 회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¹⁶⁾

독일의 나치즘도 처음에는 독일을 자본의 노예로부터 해방 시키며 대기업을 국유화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의 정책을 표방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은행·중공업·화학공업을 비롯한 민간대기업은 국유화를 모면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겨졌을 뿐만 아니라 과산위기에 직면한 많은 은행에 자금을 융자해주고 심지어는 국영사업을 민영으로 이관해 주기까지 하였다. “히틀러가 권좌에 오른 직후 몇개월 동안 일부의 노동조합은 신정권에 영합하여 민족적 입장을 표시해 보았지만, 나치정권은 가차없이 이를 탄압하였다. 마침내 모든 노동자가 독일노동전선이라는 조직속에 편입되

(15) F.M. 웃킨스, *op. cit.*, p. 185 및 p. 186.

(16) 앙리 미셸, *op. cit.*, pp. 60~61.

었고, 노동전선은 사회보험, 상부조합, 노동금고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 기업내에서는 종업원이 위임이사회에 대표를 보내고 있었으나, 그 위임이사회 의 임무는 기업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노동규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와 기업주는 손을 맞잡고 공통의 일에 종사하는 체제가 이루어졌으며, 노동존중법에 의해 노동자는 파업이 금지되었으므로 계급투쟁은 그림자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¹⁷⁾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몇 가지 법률이 있었으나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도매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노동임금의 상승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결국 西方파시즘은 계급이익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국가이익을 앞세워 계급협조로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것이었으나, 국가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에 노동분쟁의 조정도 결국은 노조에 대한 탄압이나 파업금지의 수단에 의존하였으며, 그 수단의 행사도 잔인한 폭력에 의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파시즘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거부하였으며, 개인주의, 人權,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었다. 개인의 존재의의는 공동체를 매개로 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편입되어 명령하는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자유는 방종으로 퇴화되는 것이며 방종은 집단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목적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理性에 바탕을 둔 행동도 생명의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하여 파시즘은 反知性的인 반동이었으며 폭력을 미덕이라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파시즘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는 계급 투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회집단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동시에 자유방임주의는 집단의 총체를 무시하고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보아 배격하였다. 볼셰비즘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나치즘은 國家社會主義를 내걸고 대항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社會主義의 개혁은 실시하지 않았다. 파시즘은 국가주의를 주장하고 모든 국민을 黨을 통하여 독재체제에 그리고 국가와 체제를 지지하는 사상에 일체화시키고자 하였다.⁽¹⁸⁾ 이러한 모든 것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의 새로운 작성

¹⁷ (17) *Ibid.*, p. 93.

(18) *Ibid.*, pp. 14-22.

을 요구하는 악몽과도 같은 역사적 경험이었다. 더구나 독일에서는 사회민주당이 부르조아사회를 점진적으로 혼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나치당의 정권장악을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나치당의 대두에 협력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¹⁹⁾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하나의 완전한 권위주의적 지배형태였다.

2차대전후 서독 社會民主黨을 이끌었던 슈마허는 히틀러와 나치들은 資本家階級과 결탁함으로써 權力を 장악했다고 보았으며 나치독재를 독일프를 레타리아에 대한 계급투쟁에 있어서 獨占資本主義支配의 결정기로 보았다. 또한 그는 2차대전 후에도 독일자본가들이 현실적으로 몰락하지 않는다고 보아, 1933년 히틀러의 승리와 자본주의적 배후인물들의 결합이 불가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 후의 독일에서도 내적으로 大企業과 이를 지원하는 이익집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두려워 하였으며, 연합국의 점령상태로부터도 독일 자체가 自由로워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²⁰⁾ 사회민주당은 1933~1945년간 히틀러의 國家社會主義의 暴力的 支配아래에서 人間尊嚴性을 경시했던 사실을 반성하고, 마르크스의 계급윤리의 계급을 극복해서 보편적 질서라는 뜻에서 倫理的인 自己理解의 방향에서 프로레타리아獨裁를 배제한 民主主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따라서 다양한 연원에서 공급된 自由와 人間尊嚴性을 위한 民主主義時代를 건설코자 하였다.⁽²¹⁾ 여기서 自由主義的 社會主義(또는 民主的 社會主義)가 정립되어 나왔다. 기본적 가치는 인간이 그의 존엄성속에서 자기생활을 최대한으로 규정할 自由를 가졌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욕구하는 바를 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욕구하는 바 모든 행위능력을 수정하는 것은 正義이다. 正義는 모든 사람에게 自由속에서 自己生活을 價値있도록 表現할 동일한 機會를 부여하는 尺度이다.⁽²²⁾ 그리하여 모든 정치활동은 모든 종류의 全體主義的 獨裁가 새로운 독일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 걸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사실상 共同決定해야 할 새로운 政治的이며 社會的인 內容을 가진 새로운 독

(19) Ibid., p. 179.

(20) 金成嬉, 『獨逸社會主義政黨의 系譜의in 整理過程에 관한 研究』, 서울, 1967, p. 93.

(21) Ibid., p. 81.

(22) Ibid., p. 91.

일을 창조함을 그 최고의 임무로 생각하였다.”⁽²³⁾ 그리하여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노동자계급에 특별한 임무를 가지면서도 노동자계급의 政黨에서 國民의 政黨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國家와 社會의 모든 事項에 있어서의 모든 市民의 共同決定을 의미하는 民主主義, 國家, 經濟 및 文化에 걸친 公的生活에 있어서의 人間의 尊嚴性과 人權概念의 實際的 適用, 社會的 正義 및 痘과 年齡에 따르는 社會的 保障”등이 1951년 고데베르그 基本綱領의 바탕을 이루었다.⁽²⁴⁾ 이러한 배경에서 서독에서는 구체적으로 共同決定制라는 독특한 產業民主主義의 한 制度가 배양되어 나왔던 것이다.

(4) 資本主義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보장에 의한 私有財產制와, 경제적 자유를 갖는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市場經濟에 입각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적극적 측면을 구성하는 이 두가지 요소는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재산권은 인간의 生存과 自己發展에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재산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때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 오게 된다. 市場經濟의 경우에도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동일할 때 경쟁을 통하여 이상적으로 公共의 福利를 가져 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의 그렇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 공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독점자본·금융자본의 형태가 발전되는 경우에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거대한 경제력의 형성으로 시장경제 자체가 부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발전된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두가지 부정적 경향을 제한하는 의미에 있어서 소유권의 分散으로 영리사업의 형태가 변모되면서, 경제권력이 소유에 연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소유권은 축소되면서도 경제권력 자체는 집중되어 생산자 및 소비자 그리고 사회공동체 전반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國民經濟 내부조직의 성장에 있었다.⁽²⁵⁾ 영리사업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종류의 경제적인 연합체의 크기 및 영향력도 커져갔다. 경제권력의 집중은 市場權力과 經營者權力

(23) *Ibid.*, p. 96.

(24) *Ibid.*, p. 97.

(25) 이 부분은 社會主義同盟(임종철역), 『20世紀社會主義』, 日新社, 1979, pp. 207-210을 참조함.

의 두가지 형태를 취하여 이루어졌다. 시장권력은 賣買・貸借・雇傭 및 解雇가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市場 어느 곳에서든지 재화와 용역의 수요・공급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다. 이 市場權力を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배하는 所有主인 경우가 드물고, 예컨대 經營者・銀行・保險會社 및 建築會社・製品의 제조와 판매의 同業者協會 및 販賣協議體・노동자의 勞動組合과 協同組合・그리고 國家등이다. 한편 영리사업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증대됨에 따라 영리사업의 운영은 所有主로 부터 전문적 경영자에 위임되고, 이 전문적 경영자는 독립된 사업의 내부조직 안에서 조직의 힘에 의존하여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것이 經營者權力이다. 市場權력과 經營者權력은 모두가 소유에서 연유되는 것이지만 조직에 의하여 강화된다. 그리고 이 두가지 권력은 조직의 최고층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사되며 產業經營은 사실상 이 두가지 권력 모두를 행사한다. 또한 이 經營者(또는 一般職 最高經營者)는 충분히 이윤을 남기고 있는 한, 그들의 방침대로 영리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으며, 그들은 통상 충분한 紙料외에도 權利株와 無償株를 제공받게 된다. 이 권리주와 무상주는 과세대상이 되는 昇給이 아니고 租稅 減免대상이 되는 資本利得으로 되기 때문에 주식을 제공받는 경영자에게는 더욱 유리하며 이 자본이득에 의하여 그 경영자를 그 회사에 더욱 확고하게 언제까지나 붙들어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⁶⁾ 또한 이들의 지위는 관리조직론의 발전[예컨대,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의사결정론, 프레데릭 헨츠버그(Friederick Herzberg)의 新經營論 등]에 의하여 합리화되기도 하였다.⁽²⁷⁾

선진된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권력과 경영자권력이 복합적으로 富의 성격과 배분・경제성장의 체제와 가치・政府의 능력과 태도 및 권력구조를 변화시켜 준 커다란 변혁의 매개가 巨大企業 및 그 거대기업이 母會社로서 자리잡고 있는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에 子會社를 설치하는 多國的企業이다. 현대적인 기업이 그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技術・製品改良・새로운 產業物質・電子工學의 研究・宇宙科學技術 등 대자본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결국 巨大企業만이 생산자로 될 수

(26) 찰스 베빈슨(1978), *op. cit.*, p. 20.

(27) *Ibid.*, pp. 36-44 및 R. Bendix, "Industrialization, Ideologies, and Social Structure," in J. Smelser (ed.), *Readings on Economic Sociology*, Prentice-Hall, N. J., 1965, pp. 26-38.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거대기업은 독점기업으로서 경제를 더욱 더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²⁸⁾

또한 이 巨大企業은 세계적인 테두리 속에서 활약함으로써 多國籍企業의 형태를 취하고 새로운 獨占的・多生產品・多產業企業으로서 1960년대와 1970년에 다른 어떤 조직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신장하여 國家와 國民經濟의 테두리를 초월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경영자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²⁹⁾

(1)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조합이 弱體이며, 또 稅制 및 기타 법제도가 경영자에게 유리한 입지조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2) 파업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생산을 한 國家로 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

(3) 사업소득간의 조정, 가격이전 등에 의하여 과세를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4) 稅制面에서 유리한 국가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국제수지에 있어서의 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부과된 각종 제한을 벗어 날 수 있다는 것,

(5) 연구개발을 母會社에 집중시킴으로써 국가단위의 회사에서는 불가능한 대규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6) 세계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이 가능하여 關稅・資本・카르텔・세금・財務諸表의 공개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사실 主權國家 자체가 거래기업에 희생되고 있다. “國民經濟는 각국에 근거를 둔 個別企業의 단순한 통합체는 결코 아니다. 각국의 GNP, 國家의 세입, 1인당 消費水準, 海外貿易, 國際收支 및 金融事情 등을 그 나라 企業의 生產, 販賣, 租稅 및 払儲과 반드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경제를 관리, 통제하는 정부의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각국 정부는 이미 失業의 증대, 인플레의 급속한 진행, 화폐가치의 하락, 환경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도시나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구성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28) 거래기업의 독점상태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찰스 레빈슨(1978), *op. cit.*, pp. 23~26 및 에스테스 키포비(박찬일 역), 『독점; 소수의 손에』, 도서 출판 까치, 1979.

(29) 찰스 레빈슨(1976), *op. cit.*, pp. 54~55

또한 政策方向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 축소되었다. 왜냐하면 大企業의 힘과 권능이 이미 일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통적 경계내에 억제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혼합경제의 개념까지도 진부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巨大企業과 동맹을 맺고 제휴하지 않을 수 없다. 국유화된 산업과 기업은 그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현 체제의 운동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그의 세력을 유지하고 번영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통상 거래기업과 합병하거나 合作投資를 하지 않을 수 없다.”⁽³⁰⁾

찰스 레빈슨은 기업의 거대화, 다국적기업화 및 캐쉬 플로우 極大化로 인하여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³¹⁾

(1)直接投資가 점차 海外貿易의 수출에 대치됨으로써 일국의 수출과 國際收支均衡간의 관계는 그 의미를 잃어간다는 것,

(2)케인즈學說에 근거한 完全雇傭政策이 시행된다면 3~4퍼센트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항구적인 것으로 정착되기 예 따른다는 것,

(3)종합적인 캐쉬 플로우(內部留保)와 留保利益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조달되는 產業投資의 변화유형과 내용의 정후로서 나타나는 構造的失業의 증대와 부단한 金融危機를 수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出現,

(4)國家經濟의 주요부문에 대한 國家權力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저하되고意思決定의 중심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國民經濟로부터 世界企業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

(5)구조적이고 투자에 기인하여 발생된 失業이 새롭고 완장한 긴장으로 대두되었고 大企業主導 經濟의 “職務없는 번영”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것.

巨大企業이나 多國籍企業을 관리하는 經營者의 經濟權力이 한 국가의 민주적 능력을 능가하여 위에서 언급된 여러 파생적인 모순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經營者의 經濟權力を 통제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계획된 市場經濟” 또는 “社會的 市場經濟”的 이념에 더욱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

(30) 찰스 레빈슨(1978), *op. cit.*, pp. 21-22.

(31) *Ibid.*, pp. 33-34.

(32) 社會主義同盟, *op. cit.*, pp. 211-214. 이것은 궁극적으로 權力의 再分配를 의미하고, 이것은 立法活動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의 방법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產業民主主義의 발전 방향이다. 이 경제권력의 통제에 있어서 이 권력에 반대되는 對抗的인 세력 사이에 힘의 균형(온갖 특정한 市場에서의 판매자의 권리은 구매자의 권리에 의하여, 대부분자의 권리은 차용자의 권리에 의하여, 고용주의 권리은 노동조합의 권리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균형될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각 당사자의 권리은 다른 한 쪽의 균형적인 권리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경제권력의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外部的・內部的 統制를 통한 경제의 계획화(경제에 대한 국가의 戰略的 參加),⁽³³⁾ 그리고 社會的 責任負擔의 원리가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이루어 작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경영자권력의 집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미 카르텔法規조차 巨大企業과 多國籍企業 앞에 무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것, 즉 경제권력을 사회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사회적 통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생산자층에서 산업민주주의 기구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부담을 하게 하는 데 있다.⁽³⁴⁾ 이 사회적 책임부담의 원리는 곧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래기업 내지 다국적기업의 경영자가 능률・생산성・이윤극대화라는 그들의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생기는 인플레이션・구조적 실업・부단한 금융위기를 수반하는 스테그플레이션・환경오염・노동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질환과 노동재해의 증대에 대처하여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그 피해가 오는 작업의 과정을 잘 알고 있고 또 과정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노동자(그리고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意思決定領域인 계획과 관리 단계에 직접 참가할 것을 주장하는 것”⁽³⁵⁾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경영자가 이윤획득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그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노동자의 福祉와 安全이라는 근본문제를 의사결정영역인 계획과 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노동자 자신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기업활동의 통제를 위한 공공적인 노력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고, 기업이 자기통제를 하고 社會的 責任을 다 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란 사실도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며, 경영자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서 생기는 경영

(33) *Ibid.*, pp. 215-222.

(34) *Ibid.*, pp. 222-226.

(35) 찰스 레빈슨(1978), *op. cit.*, p. 55.

특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라는 것은 기업외부가 아니라 기업내부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³⁶⁾ 산업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세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산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한 사회국가의 테두리 속에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민주국가가 기업의 이익에 희생되고, 또 다국적기업의 이익앞에 子會社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업을 통제할 능력이 민주국가의 정치적 통제력 안에 존재치 않고 있다면 그 통제의 새로운 길이란 기업내부에서 계획과 관리에 모든 근로자가 직접 참가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산업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인 것이다.

III. 몇가지 명제에 관하여

(5) 產業民主主義는 노동운동이 주축이 되어 오랜 기간 동안 자본가계급이나 경영자에게 투쟁해 온 결과로서 부상되었다. 산업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내지 노동운동에 있어서 歷史的 主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보다 강력한 경제적·정치적 힘에 대하여 후방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시켜 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서는 가능한 많은 것을 얻는다는 實利的 方法을 택하였으며, 오히려 산업환경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때까지만 해도 勞使의 어느 쪽에서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단결된 自主的 結社라고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산업체나 정부쪽에서도 교섭과정에서는 언제나 최대한의 억제와 최소한의 양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을 경제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전환시키려 노력해 왔다. 이리하여 오늘 날까지도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관심은 부수적인 社會的 政策에 있고 경제문제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사용자나 정부에 있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경영자의 권리이며, 보다 많은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라는 신념이 확고해져 왔다.

(36) *Ibid.*, pp. 34-35.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黨이나 政府가 경제문제에 대하여 절대적 책임을 지는 한편 순종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생산책임량의 달성을 위해 노동자로 하여금 동의하게끔 하고, 노동의 안전·성인교육·문화활동·주택사업·휴가·건강·복지시설 등 사회적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부수적인 사회정책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관점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도 거의 표준적인 것으로 되어 왔다.⁽³⁷⁾

산업민주주의는 사용자나 정부의 권리로서 행사된다고 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자세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노동자도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 자유를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권력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조직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 한, 노동자(또는 생산에 관련된 모든 조직의 근로자)는 항상 소외당하기 때문이다. 산업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자유이다.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로서는 경영자권력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은 역사적으로 판명되었다. 산업민주주의는 부르죠아혁명의 위대한 유산인 自由를 상속한다. 그 自由는 하나의 계급이나 특정한 계급에 한정될 수 없다. 부르죠아계급에 봉사했던 자유주의의 自由는 모든 사람에게, 생산에서 소외되었던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것이다. 産業民主主義에 있어서 새로운 自由는 또한 자본주의와 결부되었던, 그리고 세계의 곳곳에서 새롭게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모든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全體主義的 또는 權威主義的支配에 대해서도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공산주의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一黨獨裁的支配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기업·정부기관 또는 군대의 모든 관료조직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유능력을 향양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는 사람들이 모두 인간존엄성에서 평등하다는 신념에 입각한다.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운동에 가해졌던 폭행·고문·폭력에 대하여 인간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평등은 자유를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자유는 어떤 형태의 姿意的支配를 배격한다. 어떤 사람들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自由는 公共善이라는 正義의 기준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正義의 기준이 확대되고 향상되는 것은 사회공동

(37) 찰스 레빈슨(1976), *op. cit.*, pp. 11-12.

체에 대한 社會科學의 分析과 文化的・道德的 基準을 끊임없이 마련해 가는데 달려있다. 이것이 모든 制度的 手段으로 되어야 한다. 正義는 “주요한 여러 사회제도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고, 또 사회적 협동에서부터 이득을 결정하는 방법”이다.⁽³⁸⁾ 이러한 자유와 정의가 제도적으로 설정되는 방법중의 하나가 산업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바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것이며, 이것은 종전까지의 노동운동의 소극성에 적극성을 부여하는 의미인 것이다. 서독에서 확대 실시를 기도하고 있는 노사공동결정제도 그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자로 하여금 그들의 自己責任의 人格과 자유의지의 가치를 발휘시키도록 하자는 데 있다.⁽³⁹⁾

(6) 앞에서 현대산업사회의 경제권력의 집중은 소유에서가 아니라 그 관리에 연유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산업민주주의는 所有條件을 불문한다. 그 소유형태가 부르죠아的 所有 내지 경제적 통제이든 또는 공산주의적 관료주의의 절대적 권력이든 간에 그 소유의 조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하여, 즉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으로 생산과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것이다.⁽⁴⁰⁾ “일체의 經濟權力이 그 本質 및 그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통제를 받도록”하는 것이다며 “이 統制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⁴¹⁾

(7)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자 내지 모든 근로자의 經營參加를 달성코자 하는데 있어서 우선 노동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그들의 이해관심을 정립해서 그것을 조합의 정책에 기초로 삼는다.

산업민주주의의 입장으로 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 스스로 자유롭게 결성한 것이어야 민주적인 것이고, 또한 한 國家수준에서는 단일 노동조합이 經營者權力에 대하는 대항권력으로서 강력한 것이라고 본다. 多黨制를 채택

(38) 랄프 다렌도르프(황성모 역), 『激動期의 新自由』, 檻域書齋, 1979, p. 106.

(39) 黃性模, 『現代社會思想史』, 民潮社, 1964, p. 227.

(40) R. Maerker, *Mitbestimmung: Industrial Democracy in West Germany*, Friederich-Ebert-Stiftung, Bonn, 1978, p. 6. 서독의 社會民主黨은 다양스러운 기업 형태의 존재를 주장하고,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며, 경제는 경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活動形態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黃性模, *op. cit.*, p. 219). 이러한 입장은 英國에서도 비슷하다(社會主義同盟, *op. cit.*, pp. 136-140 및 pp. 199-206).

(41) 社會主義同盟, *Ibid.*, p. 227

하고 또 이념적으로 결성된 정당들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정당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들간에 정당의 選好에 따라 분열될 수 있고,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정당이 있어서 노동조합이 그 정당에만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정당의 정책이 꼭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그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공산주의체제와 같이 노동조합이 黨에 예속되어서는 노동조합 자체가 자유로울 수도 민주적일 수도 없다. 또는 여러 후진국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못하는데도 조합의 간부에 의하여 그 국가의 지배자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독자적이어야 하고 노동자의 이익에 따라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의지가 형성되어야 한다. 산업민주주의는 自由勞動運動을 통해서 단일한 民主的 勞動組合이 결성되어야 하는 것이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法的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파업권이 확보되어야 한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노동의 몇 가지 수준, 즉 職務・事業場(工場・事務所 또는 회사사업장)・企業・國家 또는 그 국가가 속하고 있는 국제적 집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얹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익과 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산업민주주의의 기본 목표이기도 하다.⁽⁴³⁾

(42) 찰스 레빈슨(1976), *op. cit.*, pp. 14-15에 의하면, 모든 나라에 있어서 생산성의 손실은 질병・災害・失業에 의한 노동일의 손실에 비하면 대수로운 것이 아니며, 1959년 이래 일년간 파업손실이 가장 많았던 1970년 美國의 경우에 그 손실이 全勞動時間의 0.29%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업의 결과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생각도 근본적으로 오류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파업과 그 결과로서의 동태적 임금정책은 기술진보와 高能率產業을 이루는데 공헌했으며, 또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와 무익한 대결을 피하고 團體交涉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측면제도 되었다는 것이다.

(43) 다렌도르프는 그의 新自由의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강력한 노동조합도 국가 관료적 제국주의 및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다렌도르프, *op. cit.*, p. 27).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들이 아무리 항의하더라도 슬며시 스며드는 인플레이션은 그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폭리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살아 남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살 수 있었던 어려운 집단중에는, 조직화된 노동자집단과 대기업과 집단도 여기에 속한다. 만약

(8) 산업민주주의가 기업의 감사회와 이사회(가장 전략적이고 재정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곳), 그리고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공장 또는 현장(이것은 보통 노동자의 관리라는 의미에서 工場委員會 또는 經營協議會의 형태)에 대하여 노동자의 직접적 참가의 어떤 형태를 추구하든 또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독자적인 경영 영역에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든 간에, 산업민주주의가 경영자의 권력집중과 권위에 반대하는 것에서 전통적으로 경영자의 고유영역이라고 하는 신념이나 의견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민주주의에 대하여 경영자 또는 勞資의 제3자는 경영과 노동 사이에 고유하고도 상호 배제적인 영역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 왔으며, 그 각 영역에는 각각 알맞는 인간능력, 즉 그 영역의 기능을 담당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 왔다. “현재의 社會發展단계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效率을 증진시키기에는 그들의 熟練・教育・천부적인 재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노동자를 최고경영자나 공장경영자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不協和와 충돌을 야기시켜 생산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⁴⁴⁾고 하는 것이 산업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지금까지의 유력한 논지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필요한 경우에 경영상의 방법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여러 국가에서 組合所有의 사업경영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여지고 있다.⁽⁴⁵⁾ 노동자가 의사결

에 그들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지급부담을, 그들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마는 것이다”(*Ibid.*, pp. 40-41). “.....말하자면 노자가 역사적으로 싸워 왔던 것을 계속하기 보다는 서로에게 더 이익이 될 때는 공동으로 행동한다는, 이른바 책임의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써 노자공동결정제도가 출현했던 것이다”(*Ibid.*, p. 67). 말하자면 두개의 지배집단에 의하여 회생되는 계층(농민층・자영 수공업자층・소상인 등)도 경제에 관한 한 지역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국제경제체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주변에 속하는 국가들의 노동자들(대개의 경우 노동조합이 강력하지 못하다)은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주적인 자유노동조합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機制설정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44) 찰스 레빈슨(1978), *op. cit.*, pp. 57-58.

(45) 예컨대, 이스라엘의 히스다르루트는 이스라엘 총 GNP의 25%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 솔렐 보네 건축회사는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히스다르루트는 이스라엘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관장・운영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諸國에서도 노동조합대표가 국가정책・정책기구와 인력정책 및 사회적 영역에 관계되는 기관에 거의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과 실업보험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직접 운영되고 있고 도매・소매・생산에서의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조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 소유의 관광회사(예컨

경에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능력에 요구되는 것은 지식·적성·숙련·경험의 배합이다. 실제로 기업은 기술자와 노동자(숙련·반숙련)가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최고경영자는 단지 인간을 다루는 것이다. “보통의 知能을 가진 사람이 6주간에 통달할 수 없는 經營職은 영국의 산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利害와 기량이 유용한 영역은 어떻게 사람을 活用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면이다.”⁽⁴⁶⁾ 따라서 “경영이란 결국 權力政治의 기술이고 사람을 조종하고 지휘하는 기량인 것이며, 產業內에 있어서 이러한 努力이 집중되는 대상은 利潤追求를 위하여 生產設備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肉體的·知的 勞動者이다.”⁽⁴⁷⁾ 대개의 경우 각국에서는 소위 경영자의 고유한 영역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제도를 투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노동자에게 훈련과 교육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9)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자의 책임있는 경영참가를 요구한다. 勞使간의 공동협의는 책임있는 경영참가로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었던 勞使協議會(經營協議會 또는 經營委員會, 국가에 따라서는 工場委員會 같은 것)에서는 노동자가 어떤 형식으로 그 대표자를 그 협의회에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협의회의 권고나 협력이 法的으로 강제성을 갖게 하더라도 그 협의회의 권한이 본질적으로 諧間에 그치는 것인 이상, 그 협의회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경영자측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하여 전 체적으로 산업민주주의에 거의 공헌하지 못하였다. 노동자 또는 被傭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신분을 보장하고 도구가 아니라 인간

대 스웨덴의 레소社)·호텔·건설회사·클판사·은행 등이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와 통신망, 벨기에의 전홍소 소매협동조합·관광회사, 오스트리아에서의 노동조합소유의 기업체(생명보험·관광·신용·클판·레코드·건설·제약·제지·소매등의 분야)에 대한 완전한 관리; 독일의 경우 독일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계마인빌트샤프트銀行은 서독 4위은행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독일 최대의 주택건설회사인 노이에 하이마트는 독일노동조합 소유이며, 이 회사는 독일내의 노동자주택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 子會社인 노이에 하이마트 인테내셔널은 프랑스·이탈리아·이스라엘·캐나다·세이론·가나·캐나다·베네수엘라 등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영능률면에서 다른 私企業보다 훨씬 원동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 化學製藥會社인 스코트 베이터 코먼웰즈社는 9개의 子會社를 가지고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Ibid.*, pp. 95-99).

(46) *Ibid.*, p. 18에 알리스테어 맨트(Alistair Mant)가 영국 경영자협회 보고서인 『70년대의 經營者教育』에서 인용하고 있다.

(47) *Ibid.*, p. 18.

으로서 대접해야 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성립된 경영방식이 민주주의적인 것이며, 이 민주주의적인 경영방식에서는 애매모호한 협의에의 권리주장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임있는 참가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⁴⁸⁾ 경영에 있어서 모든 決定이 모든 被傭者(기술자·職工員·事務員·각종 肉體勞動者)의 즉각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위원회”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계층의 被傭者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대의원에 의하여 대표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모든 관련된 의제는 자의적으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10) 산업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및 경제적 민주주의와 합수관계에 있을 수 있다. 산업민주주의는 적어도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목표로 할 경우는 정치적 및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고한 발전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단계 다음에 산업민주주의가 단계론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산업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적 주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가 덜 발전된 국가에서는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 자체를 포함한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만큼 더 많은 시련과 노력이 필요할 따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또는 사회·국가의 다른 구성원이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미 범세계적으로 공업사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공업노동자는 불가결한 존재로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48) 엘튼 메이요의 인간관계론에 대하여 이 協議의 애매모호성 또는 생산성을 위한 첫줄의 사회학이라는 고전적 비판을 상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참조；金晉均·慎侑根, 『經營組織論』, 法文社, 1974, pp. 56-64; 라이트 밀즈(강희경·이해찬 역)『사회학적 상상력』, 弘盛社, 1978, pp. 113-117; 에치오니(김재윤 역), 『現代組織論』, 法文社, 1968, pp. 69-72.